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92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찬성자 : 이기현 · 박홍근 · 박해철
김 윤 · 이주희 · 박지원
조계원 · 한병도 · 민형배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재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조치요구 등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운영,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 등 협회의 행정 운영 전반에서 위법사

항을 지적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장 등 이에 책임이 있는 협회의 주요인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축구협회는 이에 따르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해당 규정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요구 기간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9제2항 후단 중 “9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9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치요구, 조치요구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 ⑬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_____

-----30일-----

_____.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

_____.

1. 제18조의9제2항 후단을 위반

<u>1. · 2.</u> (생략) ② ~ ⑤ (생략)	<u>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u> <u>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u> <u>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u> <u>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u> <u>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u> <u>자</u>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